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가단144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16.

##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20. 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금 5,300,3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0,3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4834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무(5,300,312원 및 그 중 금 2,751,362원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한편, C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4.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C, E이 있었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1.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21. 6. 25.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존재하여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상속 자체의 포기와는 그 요건, 효과 등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F의 전세권(전세금 3,500만 원)이 사해행위 이후 2021. 7. 26. 말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8,250,000원에서 전세권자 F의 전세금액은 3,500만원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63,250,000원(98,250,000원 - 35,000,000원) 중 채무자인 피고 C의 상속지분 가액 18,071,428원(63,250,000원 × 2/7 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할 금액은 피보전채권금액인 5,300,312원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별지